#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가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492 [www.hongik-art.com]

🎙 💆 🔾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09.1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주)홍익아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주)홍익아트]

20 .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당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 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 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 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청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17, 3층 ]

[대표전화 : 02-6012-2351] [팩스번호 : 02-6012-2350]

[담당부서: 02-6012-2352, 지원팀]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	게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회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회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홍익아트		٨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17, 3층				
(주)홍익아트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78 1 1=	2009.06.23		2009.07.03	권미혜	02-	6012-2351	02-6012-2350	
	법인등록번호 11		0111-4122480	사업자등록번호		211-8	38-28886	

※ 본 업체는 현재 대표자인 권미혜씨가 2005. 7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였으며, 2009년 7월3일 법인으로 변경된 업체입니다.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1	7, 3층		
(임원)	권미혜	<b>♥ 홍익아트</b>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미혜	02-6012-2351	02-6012-2350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17, 3층				
(임원)	김용주	<b>약홍익아트</b>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권미혜	02-6012-2351	02-6012-235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홍익아트]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홍익아트	
상 호	홍익아트 00지사	
상표(서비스표)	❤️홍익아트	

## 5. 최근 3개 사업연12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295,567	245,798	2,049,769	1,253,489	80,933	94,013
2022년	2,229,999	42,517	2,187,482	1,179,595	123,230	147,713
2023년	2,294,315	75,727	2,218,588	975,347	19,798	61,106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교민에구	이듬	מאים ו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권미혜	대표이사	2009.06.23 ~ 현재	(주)홍익아트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관련 임원	김용주	감사	2009.06.23 ~ 현재	(주)홍익아트 감사	가맹점 관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 점 	상 근	비상근	역원구(8)
2023년 12월 31일	2	0	4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이비는 미	2 0 -1	존속기간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b>약</b> 홍익아트	사 교 기	2023.01.17 출원	출원 4020230009443	(조)중이시모	2024.07.00	
011-	상표권	2024.07.09 등록	등록 4022194750000	(주)홍익아트	2034.07.09	
❤️홍익아트	상표권	2020.04.16. 출원	출원 4020200063432	(주)홍익아트	2031.04.29	
<b>→ 5</b> → 1 = 1	9 TH (1	2021.04.29. 등록	등록 4017212730000	(1/5 7 1=	2001.01.20	
<b>양</b> 홍익아트	상표권	2020.01.21. 출원	출원 4020200010801	(주)홍익아트	2031.03.17	
~ 671=	811.6	2021.03.17. 등록	등록 4017052660000	(178 7 1 -		
		2020.01.20 초의	출원 4020200009768		2031.02.18	
<b>양</b> 홍익아트	상표권	2020.01.20. 출원 2021.02.18. 등록	등록 4016944730000	(주)홍익아트		
학습관리	특허	2009.06.11. 출원	출원 제2009-0051841호	(주)홍익아트	2029.06.11	
운영시스템	7 9	2011.11.15. 등록	등록 제10-1085566호	(1/3 99=	2029.06.1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a href="http://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 가맹본부의 [♥️홍약아트] 가맹사업 현황

# 1. 「♥홍익아트〕을 시작한 날: 2005년 7월

※ 본 업체는 현재 대표자인 권미혜씨가 2005. 07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였으며, 2009년 7월 3일 법인으로 변경된 업체입니다.

# 2. [약홍익아트]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홍익아트	홍익아트	권미혜	2005.07.01.~ 2021.11.2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8-35번지 역삼빌딩 9층 (강남구 테헤란로205)
(주)홍익아트	<b>약</b> 홍익아트	권미혜	2021.11.26.~ 2023.12.25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28, 10층 110호
(주)홍익아트	<mark>약</mark> 홍익아트	권미혜	2023.12.26. ~ 현재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317, 3층

# 3. |♥홍익아트| 업종

영업표지	업종					
홍익아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력에드	서비스	기타 교육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홍약아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	1.	2	2022.12.31	١.	2	2023.12.31	١.
시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1	131	0	131	131	0	132	132	0
서울	25	25	0	25	25	0	25	25	0
부산	12	12	0	12	12	0	12	12	0
대구	5	5	0	5	5	0	6	6	0
인천	6	6	0	6	6	0	6	6	0
광주	4	4	0	4	4	0	4	4	0
대전	5	5	0	5	5	0	5	5	0
울산	4	4	0	4	4	0	4	4	0
세종	1	1	0	1	1	0	1	1	0
경기	35	35	0	35	35	0	35	35	0
강원	3	3	0	3	3	0	3	3	0
충북	4	4	0	4	4	0	4	4	0
충남	5	5	0	5	5	0	5	5	0
전북	4	4	0	4	4	0	4	4	0
전남	4	4	0	4	4	0	4	4	0

경북	5	5	0	5	5	0	5	5	0
경남	8	8	0	8	8	0	8	8	0
제주	1	1	0	1	1	0	1	1	0

# 5. 최근 3년간 [**♥ 홍익아트**]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30	1	0	0	7	131
2022	131	0	0	0	5	131
2023	131	1	0	0	3	132

- 6. [♥홍익아트]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없음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사정기준

[❤️홍약아트]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간 :액(상한)		년간 출액(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매출액	면적3.3 m²	상한	면적3.3 m²	하한	면적3.3㎡	
전체	132	51,602	알수없음	179,010	알수없음	8,190	알수없음	132개중 92곳산출
서울	25	60,208	알수없음	120,120	알수없음	16,380	알수없음	25곳중 21곳산출
부산	12	40,630	알수없음	90,324	알수없음	19,679	알수없음	12곳중 11곳산출
대구	6	95,563	알수없음	179,010	알수없음	9,828	알수없음	6곳산출
인천	6	53,560	알수없음	144,067	알수없음	12,870	알수없음	6곳산출
광주	4	해당없음						5곳미만
대전	5	58,578	알수없음	96,310	알수없음	23,088	알수없음	5곳산출

울산	4	해당없음						5곳미만
세종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기	35	37,683	알수없음	80,340	알수없음	10,920	알수없음	35곳중
								27곳산출
강원	3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4	해당없음						5곳미만
								5곳중
충남	5	23,400	알수없음	23,400	알수없음	23,400	알수없음	1곳산출
전북	4	해당없음						5곳미만
전남	4	해당없음						5곳미만
								5곳중
경북	5	116,025	알수없음	136,110	알수없음	95,940	알수없음	2곳산출
71.1	0	45.500	실수실수	440.000	012010	40.440	이스이이	8곳중
경남	8	45,500	알수없음	112,320	알수없음	10,140	알수없음	3곳산출
제주	1	해당없음						5곳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프로그램상의 회원현황×13만원] [당사에서는 휴업 가맹점과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가맹점을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사업장 없이 방문교육만을 하는 가맹점이 많아 연간 평균매출액 산정이 가능하나 면적당 연간 평균 매출액의 경우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수업의 시간 및 인원수,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8. [약홍익아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홍익아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32	3,302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약홍약아트**]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

다.

구분 수단		기간	(단위: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
합계			34,676	34,676	_	
71.	소계		34,676	34,676	_	
- 광고 -	비공개	비공개	34,676	34,676	_	
판촉	소계		_	-	-	
			_	_	_	

#### 11. 가맹금 예치

해당없음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홍익아트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홍익아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5,000 ~ 17,000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역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할 수 없는 사유
	1. 가입비	1,000~7,000			
가맹비	2. know-how 제공 대가	1,000~4,000	게이 제거 휴	영업 개시 및	가맹점 오픈
7134	3. 개설지원의 대가	1,000~4,000	계약 체결 후 가맹점사업자 교육일 이전	가맹점사업자 교육 이전까지 계약 해지시	이후 반환 안됨
	소 계	3,000~15,000	,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2,000			교육 실시 이후 반환 안됨
총계	_	5,000~17,000		_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최초 가맹금의 경우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며 서울특별시 17,000,000원, 경기도/인천광역시 15,000,000원, 지방광역시/경기도군(5만명 이상~10만명 미만) 12,000,000원, 기타 지역(시, 군 10만명 이상)/경기도 군(5만명 이하) 10,000,000원, 기타 지역(군 5만명 이상~10만명 미만) 8,000,000원, 기타 지역(군 5만명 미만) 5,000,000원 입니다.]

- 2) 보증금은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5,000~17,000
가맹금	5,000~17,000
보증금	해당사항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간판포함) 부분은 추정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0평기준 평당 200천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9,552				
최초공급 상품비용 (초도 물품)	(주)홍익아트	7,552		물품공급일	상품 미공급시	
인테리어 (간판포함)	개별진행	2,000	200	개별진행	개별진행	·

초도물품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지원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지역 내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b>가맹개설자는 가맹지역안의 장소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 별도의 비용은 없음.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교육, 신규교사 교육,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세무관련 교육 이수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가맹본부에서 정한 신규교사 교육 이수자	4년제 미술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없음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고정로열티	(주)홍익아트	11만원	매월1일	교재 반환	파손될 경우	추가 사용료 교재1장당 4천원
추가교육비	(주)홍익아트	1인당 2만원	매월말일	교육미참석	없음	기본 교육비는 무료
교육 및 훈련 비용	가맹본부			VIII-2 참고		
광고 및 판촉 비용	가맹본부			V-8 참고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1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_	월계속 가맹 금의 지급 기한을 경과 했을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 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기준: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경우 모두 당사에서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차액가맹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 역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 부담 금은 **계속 가맹비금 금오백만원(5,000,000)**이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홍익아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홍익아트]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양도,양수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도물품비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양도 양수 제도

- 1. 가맹점사업자는 양도 양수의 사유 및 의사를 가맹본부에 통보 하여야 한다.
- 2. 양수자의 가맹조건은 양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양수자가 원할 경우 신규가맹으로 할수 있다.
- 3.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자는 초도물품 중 대여물품은 가맹본부로 반납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초도물품구매 및 재 오픈에 따른 양도양수비 (지역에 따라 서울-500만원, 경기/인천-400만원, 기타-300만원)를 가맹본부에 납부 하여야 한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약홍익아트**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당사 소유의 모든 자료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홍익아트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홍약아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 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홍약♥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홍약아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 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홍익잼잼1			
홍익잼잼2			
홍익베베			
홍익베베1			
홍익누리1			
홍익아이1			
홍익아이2			
홍익표현	위쪽에 기재된 이외의 -	1회 위반: 구두 및 벌금	
홍익프로	교재로 수업을 할 수 없음	2회 위반: 계약 해지	
홍익동화			
홍익발상			
홍익감성			
홍익관찰			
홍익과제			
홍익만들기			
홍익종이접기			
홍익명화			

[가맹본부가 추가 개발하는 새로우 교재를 대여하여 가맹점사업자에서 보관 할 의무가 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없음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수업시간	인원	1인당 수업료
	60분	1명	15만원
		2명	13만원
		3명	12만원
-1	90분 120분	1명	18만원
일반 수업		2명	15만원
		3명	13만원
		1명	21만원
		2명	17만원
		3명	15만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체결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020 80 811	가맹본부	계열회사	
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여 미술교육을 하는 행위	❤️홍익아트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서울특별시(구 단위)	
경기도(시,군,구 단위) *경기도 '군'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수 기준 (10만명 이상/5만명 이상/5만명 미만)으로 가맹비가 다릅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인천광역시(군,구 단위)	
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광역시(군,구 단위)	
그 외 지방(시,군,구 단위) *그 외 지방의 경우 주민등록인구수 기준('시,군' 10만명 이상/'군' 5만명 이상/ '군' 5만명 미만)으로 가뱅비가 다릅니다.	

####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점포 입점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다른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다른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 제시
-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양홍악아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	_

- \*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홍익아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①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 [ <b>聲홍익아트</b>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4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 는 제외합니다.)	제34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5]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ul><li>가맹점사업자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을 할 경우</li></ul>	제35조
<ul><li>가맹점사업자가 경영 상태에 대하여 점검 및 기준에 위반 시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li></ul>	제35조
○ 관리지역 마케팅의무를 해태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35조
<ul><li>매년2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보고를 소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li></ul>	제35조
○ 계약서 제7조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5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 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Ⅰ 제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5조 2항
<ul> <li>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li> </ul>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5조 2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행정구역 조정 및 인구 변동으로 인한 관리구역 변경	제 14 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사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대·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 환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기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본부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에 양도 양수비납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지원팀 (02-6012- 235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초도물품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직계가족)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 신고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사실(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점포 운영할 자를 지정)을 관련 입증자료와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 속	상속인 사후통지 후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상속 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자에게 가맹 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발생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홍익아트**]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 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교사가 교재를 가지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지원팀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02-6012-
미술교육을 하는 행위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351)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해당없음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해당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홍약아트]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그 광고		부담비율				
구분	성격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및 행사	브랜드,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광고 직전분기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당사에서 광고의 세부사항 결정 →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당사에 광고 시행 전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생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광고 시행	(전국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 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		
판촉행사 .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판촉행사 동의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팜플렛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멤버쉽 포인트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3)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하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 어서 당사의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조항 및 표준지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0	_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목록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0	_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15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 15 10	-
가맹금 예치	- (주)서울보증보험 예치	D-15~10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필요시 실시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5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_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W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기선 시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아점포의 사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안동는 경우 아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망사업의 통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가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창바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를 알튀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상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않는 점포환경에선 :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변하는	용 청구(공시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뷰 → 90일 이내에 기맹본부부	부터 3년 아내에 가 맹본부의 책임없 는서유로계위이 종 료계약의 해자영 업용도 포함되는 경 우 가맹본부 부 담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 담액은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이미 지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u>액</u> 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을 두었으나 현재 판매촉진에 관한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사항 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사항 없음				
판촉지원	해당사항 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사항 없음				
반품지원	해당사항 없음				
마일리지	해당사항 없음				
CRM	해당사항 없음				
테스터	해당사항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지원팀 (02-6012- 235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시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시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시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지원팀 (02-6012- 2351)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홍악아트**]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홍익아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약홍약아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	비고
가맹점사업자 교육	1일	1,000,000	가맹비에 포함
신규교사 교육	1일	1,000,000	가맹비에 포함
정기 교육	1일	별도	필요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교육, 신규교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 때 까지 가맹점(지사) 오픈이 연장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_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 (02-6012-235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상담실(044-200-4010)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2.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관리 번호	해당 지역	관리지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2					
3					
4					
5					
6					
7					
œ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별첨3.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 (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주)홍익아트로부터 홍익아트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주소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

-----간인 후 절취-----

####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주)홍익아트로부터 홍익아트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주소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